◉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6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12.48	
	남양주시	수석동	1.31	
	오산시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서랑동, 지곶동, 갈곶동, 오산동	10.06	
	화성시	정남면	10.48	
	평택시	서탄면, 진위면	14.24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산남동, 미평동, 장성동, 장암동, 평촌동, 지북동, 방서동, 남일면, 남이면	6.93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4.25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붙임 1]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 경기도 구리시 ·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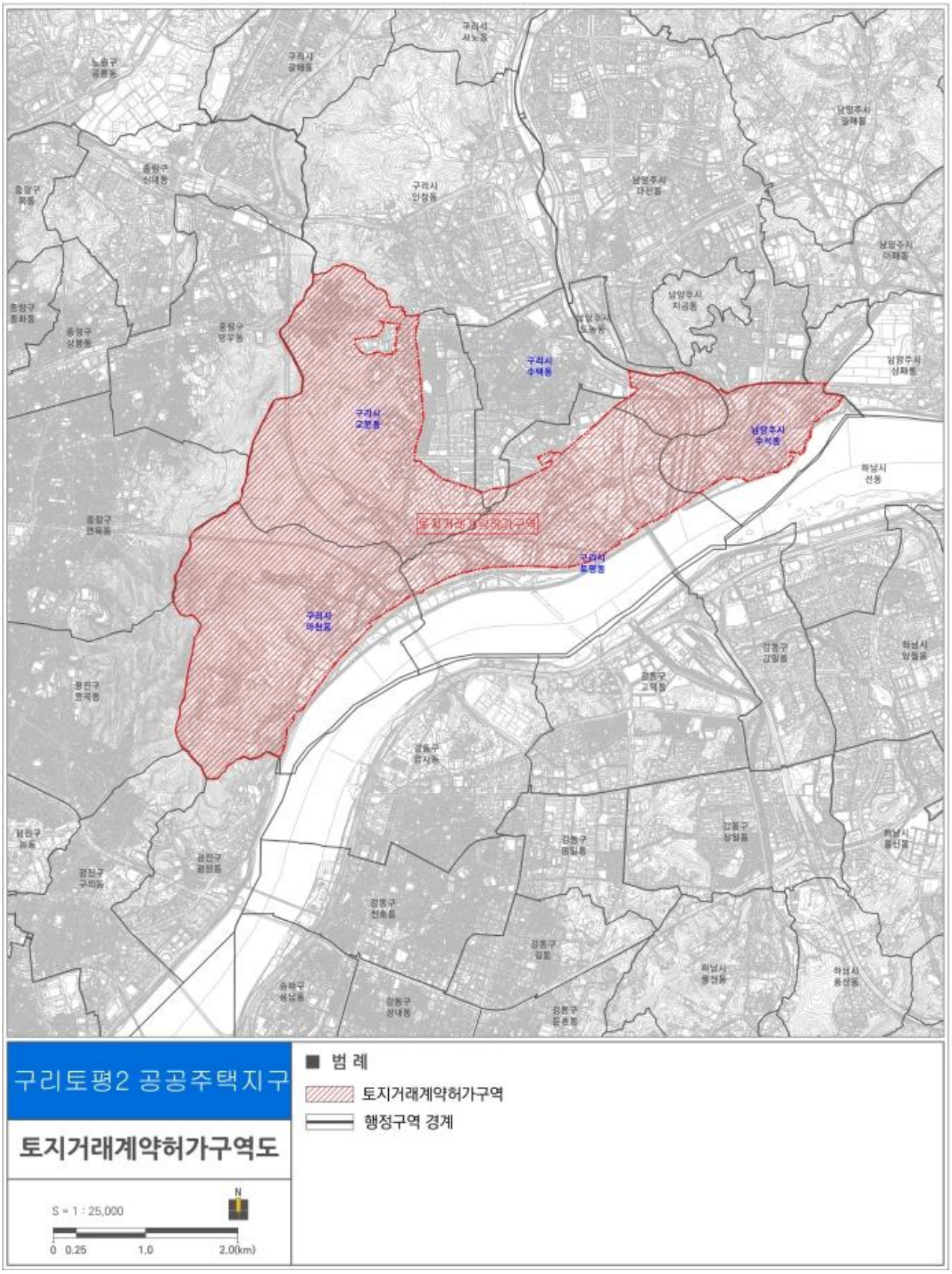

< 경기도 오산시 · 화성시 · 평택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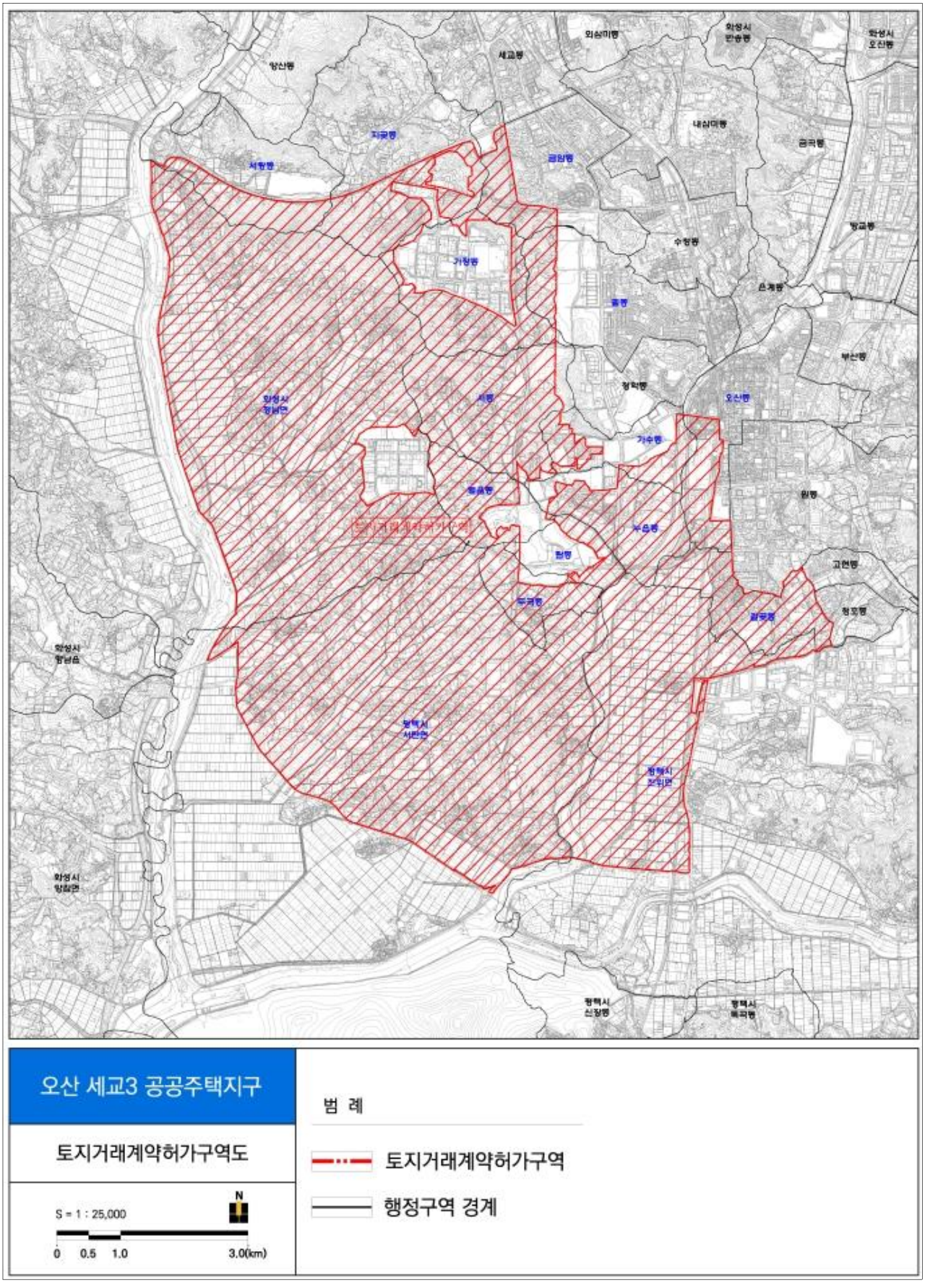

< 충청북도 청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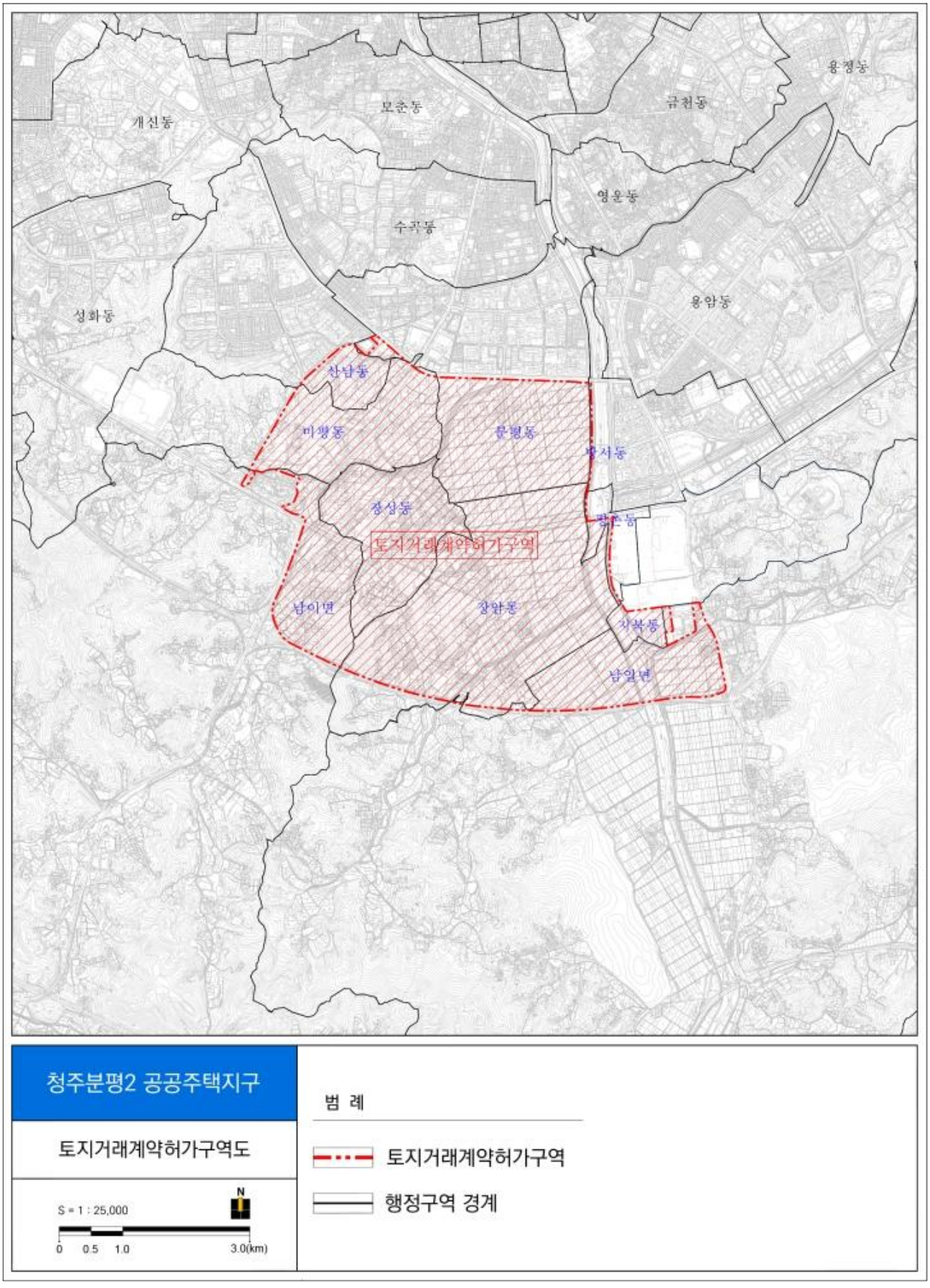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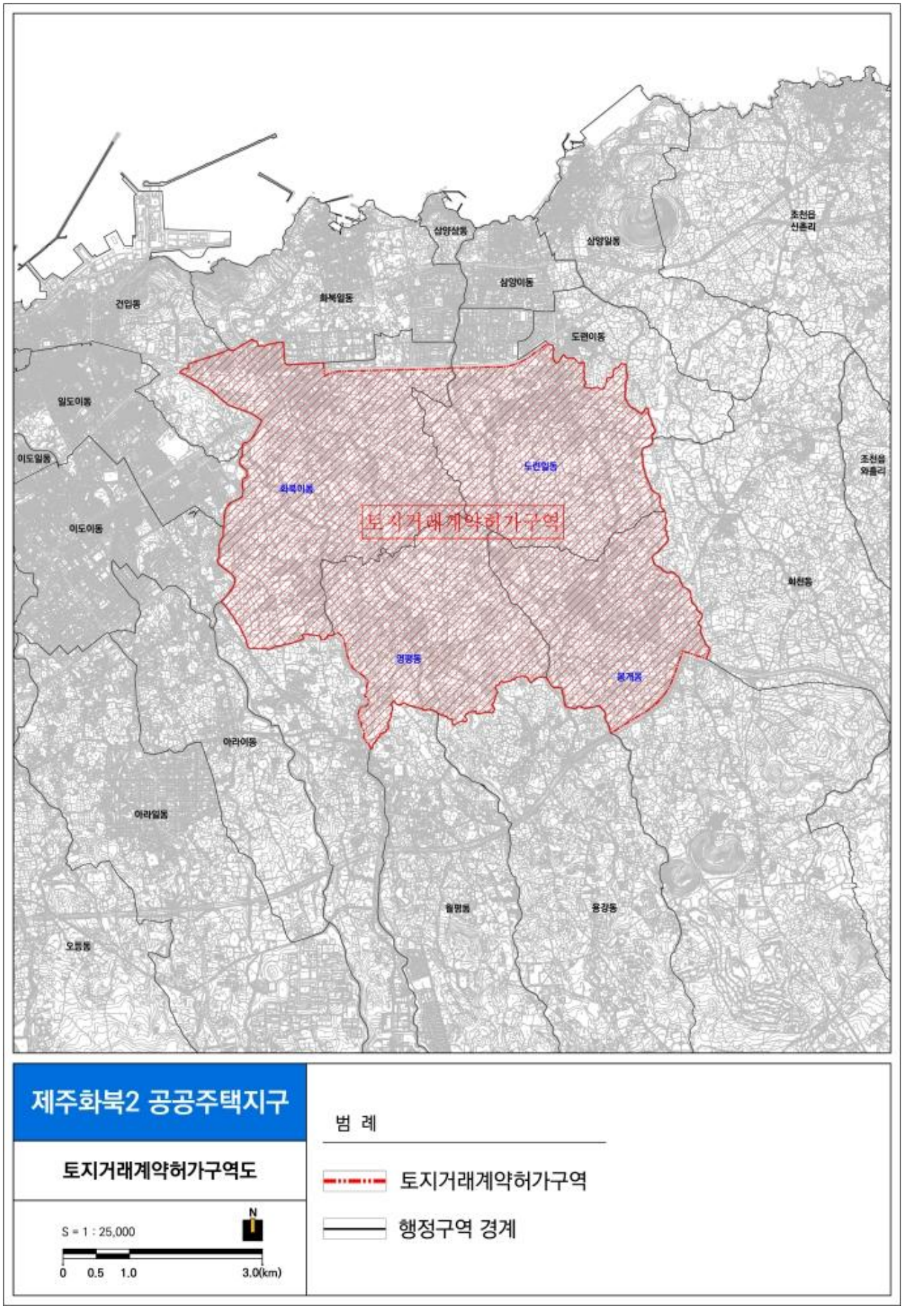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